

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. 9. 7 선고 2020가단1234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노

피 고 C

변 론 종 결 2022. 7. 13.

판 결 선 고 2022. 9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원시 D 답 2,276㎡ 중 별지도면 표시 23, 24, 25, 26, 13, 30, 27, 14,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나’ 부분 70㎡ 지상 석축, 별지도면 표시 27, 28, 29, 30,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ㄱ’ 부분 14㎡ 지상 건물(처마)을 각 철거하고, 위 각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, 5, 6호증(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원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들은 남원시 D 답 2,276㎡(이하 '원고들 소유 토지'라 한다)의 각 1/2 공유지분권자이고, 피고는 이에 인접한 남원시 E 대 560㎡ 및 그 지상 주택, 창고, 축사 등 건물 및 주문 제1항 기재 석축의 소유자인 사실, 위 피고 소유의 석축 일부가 원고들 소유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23, 24, 25, 26, 13, 30, 27, 14,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나' 부분 70㎡ 지상에 설치되어 있고, 위 피고 소유의 건물 일부가 원고들 소유 토지 중 별지도면 표시 27, 28, 29, 30, 2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 14㎡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.

2.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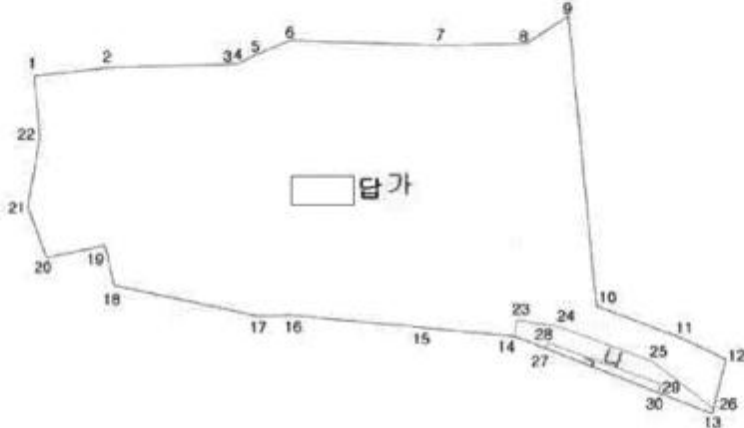
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도면 표시와 같이 원고들 소유 토지 지상에 설치된 석축 및 건물을 철거하고, 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 피고는 원고들 소유 토지의 과거 토지주로부터 토지 사용을 허가받아 사용하고 있다거나 원고들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, 그와 같은 허가 및 매매 사실 및 이로써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결론

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디모데

감 정 도

토지 소재	1 월						
							
면 적 표 시							
지 번	지 목	부 호	연 결 부 호	면적(㎡)	관 측점(명칭)	소유자	비 고
	답	가	1,2,3,4,5,6,7,8,9,10,11,12,26,25,24,23,14,15,16,17,18,19,20,21,22,1을 순차연결	2206			원고측점유
	답	나	23,24,25,26,13,30,27,14,23을 순차연결	70	23-26 관측점단선		피고측점유
	답	ㄱ	27,28,29,30,27을 순차연결	14	27-30 관측점단선		피고측점유
비 고		※ 본 감정도는 측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.					

